



행정안전부
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



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

▶ 상세주소는 왜 필요할까요?

- 원룸·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,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·호수(상세주소)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.
- 이에 따라 세금고지, 예비군·민방위 훈련, 운전면허 적성검사, 기타 공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13.1.1부터는 원룸·다가구주택·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아파트·연립·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동·층·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닙니다.

▶ 상세주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 (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)

- 신청인 :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※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관 : 건물등이 소재한 시·군·구의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.
- 처리기간 :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부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.
※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민원실에 비치

▶ 상세주소는 어디에 활용하나요?

-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·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일상생활에서 우편물·택배등의 전달·수령이 편리합니다.
-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·면·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·층·호를 표기하시면 됩니다.

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	▶	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
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00	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00, 201호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(☎ 02-3396-5940)로 문의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